

“소비자는 소득공제 40%, 판매자는 수수료 0%” 정답은 제로페이!



서울특별시



수신 내부결재
(경유)

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

안녕하십니까, 총액계약의 사후 정산문제와 관련하여 귀 협회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잘 보았습니다.

용역계약을 총액계약으로 체결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정산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계약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찰 공고 및 계약 특수조건 등에 정산 항목을 명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.

서울시 재무과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각 기관 및 부서에 안내한 바 있으나, 일부 기관 및 부서의 관행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서울시 산하 기관에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앞으로도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끝.

서울특별시

주무관	이지숙	계약총괄팀장	이정렬	재무과장	04/11 변서영
협조자					
시행	재무과-19965	() 접수	()
우	04515	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	/	www.seoul.go.kr	/
전화		/전송	/		/ 부분공개(6)